

II. 主要 懸案

1. 外換制度 改革方案

- 經常去來 自由化(企業의 對外活動 規制 緩和)는 빠른 속도로 진행
- 資本去來 自由化는 완만하게 진행

-外換制度 改革方案

- 金融産業發展審議會(金發審)의 外換制度改革小委員會가 9월 8일에 열린 外換制度 改革公聽會에서 外換制度 改革方案 제시
- 이 改革方案은 財務部와 事前 調律을 마친 것이어서 대부분 수용될 전망이다
- 기본 방향은 “經常去來 자유화는 빠른 속도로, 資本去來 자유화는 완만한 속도로”

-向後 日程

- 11月 財務部 確定案 마련, 95年初 「外國換管理法」 改正, 95年 下半期 施行 예정

-經常去來 관련 각종 규제는 第2段階(96-97년)에 대부분 自由化되고 第3段階(98-99년)에는 거의 完全한 自由化가 이루어짐

- 수출입관련 수수료, 해외여행 경비 등의 경상거래가 자유화되는 반면 외화 유출 등을 막기위해서 세법이 개정되고 세무 행정의 강화될 것임

-資本去來 自由化는 漸進的으로 이루어져서 제3단계(98-99년)에 가서야 상당부분의 자유화가 가능해짐

- 資本去來 중에서도 企業의 資金調達部門은 빠르면 95년 그리고 늦어도 96년부터는 自由化될 예정임
 - 95년 自由化: 외화 대출, 현지금융
 - 96년 自由化: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해외증권 발행
- 海外直接投資는 95년부터 制限業種이 縮小되어 96년에는 全面 自由化 실시
- 海外 不動産 投資는 점진적으로 자유화되어 98년에 完全 自由化됨

-國內 資本市場은 漸進的으로 개방될 것임

- 株式市場 개방의 경우 98-99년에도 한도 폐지를 실시할 지가 불투명한 상태임
- 債券市場 개방의 경우 98-99년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임

(한 상 완)

經常去來 部門 改革 方案

항목	현행	1단계(95)	2단계(96-97)	3단계(98-99)
企業活動				
수출입 수수료	수출입대금의 10% 또는 20만 달러 초과 시 한은 허가	한은 허가→ 한은 인증	자유화(신고제)	—
해외사무소 활동비	용도·금액 한도 초과시 한은 허가	현행 유지	자유화(신고제) 일정금액초과시는 국세청 통보	—
수출선 수금	수출실적의 5% 중소기업은 10%	한도 확대	추가 확대	(1안)한도확대 지속 (2안)30%로 확대해 사실상 자유화
연지급 수입	수출용:150일 내수용:60일	기간 연장	기간 추가 연장	국제관례수준(180)으로 연장
個人				
해외여행 경비	기본경비:5천달러 기타경비:실수요액	총경비한도제 도입 (은행인증)	(1안)신고제 전환 - 일정금액 초과시 허가제 (2안)신고제 전환	(2)한도폐지
해외이주비	4인가족 30만달러이내 은행 인증	현행 유지	일정금액이내 자유화 (초과시 허가)	—

外換去來 部門 改革 方案

外國換銀行 制度				
외화자금조달 운용	3년이상 증장기대출의 50%이상 증장기 자금으로 조달	폐지		
해외지점, 현지법인	재무부장관 인가	인가조건 완화	추가 완화	자유화
외국환 업무 지정	은행외 외국환업무 지정 가능	비은행금융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환전 업무 허용	외화차입, 외환브로커 업무 추가 허용	업무와 관련된 점두거래(OTC) 허용
현지금융	내국인에 대한 대출 등 제한	현행 유지	대출 및 신용공여 허용(자유화)	—
外換去來 制度				
포지션 제도	OB, OS, 현물환OS 한도 규제	한도상향조정	상향조정	현물환OS한도 추가 확대 또는 폐지
실수요 증명제도	3천만달러 이상 선물환, 천만달러 이상 금융선물 실수요 증명 제출	실수요제출 증명 면제	—	—
원환집중제도	5만달러 초과때만 은행 등록	집중제 정지(등록의 부폐지)	—	—
外換市場 制度				
금융선물거래	요건 및 절차 규제	증개회사 지정, 거래 관련규제 폐지	—	—
역외금융시장	역내, 역외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금지	조세회계처리 등 제한조항 정비	관련법령 정비	—
외환브로커 제도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 담당	자금중개실 독립	복수 외화자금중개전문회사 설립	—

資本去來 部門 改革 方案

항목	현행	1단계(95)	2단계(96-97)	3단계(98-99)
企業의 海外資金 調達				
상업차관도입	공기업만 재무장관 인가	SOC투자기업과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도입 허용	일반기업의 시설재 도입 허용	시설재 도입 자유화(현금 차입은 허가제)
해외증권발행	한도관리	주식상장자유화(신고제)	주식연계증권자유화(한도폐지)	주식비연계증권자유화(한도폐지)
외화대출	한도용도 용자비율 제한	용도완화 및 용자비율 폐지	—	—
현지금융	용도제한	용도제한 폐지(마약 도박 등 제한)	—	—
國內 證券市場 開放				
주식시장	종목당 10%, 동일인 3%	투자한도 확대	한도확대지속	(1)한도확대 지속 (2)한도폐지
채권시장	中企CB, 지리국공채 개방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허용	중기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허용	상장채권직접투자제한적 허용
비거주자증권발행	불허	상장주식, 예탁증권 발행 자유화(채권허가제 유지)	(심사부 신고)	(자유화)
海外直接投資				
투자제한업종	마약 부동산 임대 등 14개 업종	대폭 축소	전면 자유화	—
투자절차	30만달러 은행인증 천만달러 초과허가	허가기준금액 상향 조정	전면 자유화	—
海外證券投資				
기관투자자	投金, 年基金 (1억달러), 종합상사(수출실적 30%)외 자유화	投金 등도 자유화(비상장채권 제외)	1단계 유지	비상장채권투자자유화
일반투자자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1)투자한도 확대 (2)상장주식투자한도 폐지	(1)상장주식투자한도 폐지 (2)1단계유지	비상장주식투자제한완화
海外不動産 投資				
법인	기관투자자의 자산 운용만 허용	일반기업의 일정금액내 자산운용용 취득 허용	(1)기준금액 확대 (2)자유화(신고제)	자유화
개인	불허, 3년이상 체재자의 30만 달러 이하 취득 허용	허가제 유지	허가제 유지	일정금액이하 허용